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도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2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의의원 : 서도원 의원,
최재규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우수 자원봉사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른 표현 정비

나. 정의 삭제 (안 제2조)

다. 우수자원봉사자 우대사항 신설(안 제1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달성군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로, “군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8조제6호 중 “군지역”을 “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자원봉사업무”를 “자원봉사활동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1월전”을 각각 “1개월 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유공자”를 “자원봉사 유공자”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원봉사자의 우대 등) ① 군수는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하는 등 우대 방안 마련과 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학교·직장 등의 장에게 취업·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삭 제>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주민----------.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군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 1. ~ 5. (현행과 같음) 6. ------ 지역----------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원봉사활동 업무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

으로 정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1개월 전----------.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 1월전까지 변경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개월 전----------.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생 략)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 격려	3. 자원봉사 유공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자원봉사자의 우대 등)** ① 군수는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하는 등 우대 방안의 마련과 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학교 · 직장 등의 장에게 취업 · 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경력인정 등) 군수는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학교 · 직장 등의 장에게 취업 · 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실비지급) ① (생 략) ② 군수는 재해 · 재난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실비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범위에서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23. 8. 16. 타법개정, 2024. 2. 17. 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 장려 · 연계 ·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 법인 · 단체 등을 말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2021. 1. 5. 타법개정·시행)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 · 입원 ·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 시설 · 학교 ·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 특별시 · 광역시 · 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 · 광역시 · 도 지역의 기관 ·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 · 군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 · 조정 · 지원

7. 그 밖에 특별시 · 광역시 · 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시 · 군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 군 · 자치구 지역의 기관 ·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 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 · 군 · 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참고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하는 등의 우대 방안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안 제14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의 비전은 “자원봉사 가치 확장과 참여 확산 연대와 화합으로 따듯한 대한민국”이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① 국가적 행사 등 자원봉사 참여 및 확대, ② 사회적 인정 문화 확산 캠페인(시간인정 제도 및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인정 문화로 전환), ③ 자원봉사자 인정 방식의 다양화(행사개회, 정부 포상, 보상에서 벗어난) 등을 추진 중임.
- 이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사항을 확대하는 것은 적법하나 관내 각종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우대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 전 각 담당부서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함.
- 또한 현재 광역 및 관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 ▲우수 자원봉사자 감면제도,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등)과의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서 도 원 (☎ 2291)